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16 선고 2018나79119 판결 [공법상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16 선고 2018나7911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15 선고 2018가소1424227 판결

전 문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박선아, 서혜진

변론 종결2020. 12. 18.

판결 선고2021. 2. 16.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15. 선고 2018가소1424227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193,3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1.부터 2021. 2.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3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150,11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의 근로관계

(1) 원고는 2008년경부터 2014. 12. 19.까지 구 B정당(이하 'B정당'이라 한다) 부설 정책연구소인 구 재단법인 C(이하 'C'이라 한다)에서 연구위원으로 근무하였다.

(2) B정당 및 C은 2014. 12. 19. 헌법재판소 2013헌다1 결정에 따라 해산되었고, 원고는 같은 날 C으로부터 퇴직처리되었다.

나. 원고의 퇴직금 등 수령내역

(1) 원고는 2013. 11. 5. C으로부터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9,946,500원을 지급받았다.

(2) C은 2014. 12. 9. 소속 연구위원들에게 특별상여금 명목으로 40,800,000원가량을 지급하였고, 그중 원고는 6,422,280원을 지급받았다.

(3) C은 2014. 12. 18. 원고에 대하여 퇴직금 7,991,370원을 지출할 것을 결의한다는 내용의 지출결의서(이하 '이 사건 지출결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만, 위 돈이 실제로 원고에게 지급되지는 않았다.

다. C 해산 후 재산 처분 경위

(1) 피고 산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4. 12. 19. C에 정치자금법 제30조에 근거한 정당보조금의 반환에 관하여 안내를 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4. 12. 29. 피고에게 정당보조금 지출내역을 제출하고, 정당보조금 잔액 47,084원을 반환하였다.

(2) C은 2010. 12. 6.경 D, E으로부터 서울 동작구 F빌딩 10층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2010. 12. 21.까지 위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하고, 이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라 한다)을 전액 지급하였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B정당이 2015. 1. 2. 제출한 해산에 따른 회계보고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C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5. 1. 7.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하였고, D은 2015. 3. 17.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서 미지급 차임 및 관리비 등 일부 금액을 공제한 잔액 46,745,073원을 지급하였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모두 국고에 귀속시켰다.

라.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압류 후 원고의 권리행사

(1) C으로부터 2014. 12. 19.자로 퇴직처리된 원고 및 G 외 4인은 원고를 선정당사자로 하여 이 법원 2015카단30670호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일부 금액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 14.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원고 및 G 외 4인은 2015. 1. 28. C과 사이에, '채무자 C은 채권자 원고 및 G 외 4인에 대하여 이 사건 지출결의서에 의거하여 35,126,07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한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H 증서 2015년 제22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3) 원고 및 G 외 4인은 원고를 선정당사자로 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이 법원 2015타채3998호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일부인 35,151,370원에 관하여 채권압류(그중 35,126,070원은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것이었다)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2. 17.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4) 원고는 2015. 3. 3. D에게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취득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D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갑 제6, 20, 26호증, 을 제6~9호증, 을 제11~17호증, 을 제20~2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C은 2014. 12. 18. 원고와 사이에 C이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7,991,37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7,991,37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위와 같은 합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C은 원고에게 적어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퇴직금은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 제2항, 정치자금법 제30조 제3항,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5호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퇴직금채권은 피고의 C에 대한 정당보조금 반환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할 성질의 것임에도, 피고는 D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잔액을 전부 지급받았는바, 피고는 퇴직금채권 상당액을 부당이득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원고의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지급기준에 의하여 계산되어야 한다. 한편 C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여 해산되기 직전인 2014. 12. 9. 소속 연구위원들에게 특별상여금 명목으로 40,800,000원가량을 지급하였고, 그중 원고는 6,422,280원을 지급받았는바, 이는 정당보조금 반환 액수를 최소화하기 위한 C의 의도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퇴직금의 선지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중간정산받은 퇴직금 9,946,500원 및 위 6,422,280원, 합계 16,368,780원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은 것이 되므로, 결국 원고의 C에 대한 퇴직금채권은 전액 변제로 소멸하였다.

(2) 설령 원고의 퇴직금채권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C에 대한 정당보조금 반환채권은 정치자금법 제30조에 근거한 특별한 채권으로서 각종 조세채권 및 일반 보조금반환채권보다도 우선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으로부터 원고의 퇴직금채권에 우선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피고의 정당보조금 반환채권과 원고의 퇴직금채권 사이에 우열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정당보조금 반환채권의 집행이 먼저 이루어졌으므로 피고는 D으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잔액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있다.

(3) C은 늦어도 헌법재판소의 B정당 정당해산심판에 관한 결정을 앞둔 시점인 2014. 12.경에는 해산에 대비하여 소속 직원들에게 지급될 퇴직금을 예상하고 예산을 운영하였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여 결국 정당보조금 잔액 47,084원만을 반환하였는바, 이후 반환하지 않은 보조금인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발견되었음을 기화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퇴직금채권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

3. 판단

가. 원고의 퇴직금채권의 존부 및 액수

(1) 특별상여금을 퇴직금의 선지급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발생할 여지가 없고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14560 판결 참조).

원고가 2014. 12. 9. C로부터 특별상여금 명목으로 6,422,28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특별상여금을 지급받은 후 약 10일 만에 B정당 및 C이 해산되기에 이른 사실 및 위 특별상여금 지급 액수가 그전까지의 상여금 지급수준인 연간 1인 평균 40~60만 원을 훨씬 초과하는 액수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① 위 특별상여금 지급일시는 원고와 C 사이의 근로관계가 존속하던 시점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② 당시 정당해산심판과 관련하여 원고 등 연구위원들이 그 준비업무에 매진하였고 그 상황은 B정당으로서는 상당히 특별한 것으로서 B정당 부설기관 소속 직원이었던 원고로서도 그와 같은 업무처리를 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등 갑 제8~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위 특별상여금으로써 퇴직금의 지급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퇴직금 지급합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가) 먼저 C이 원고에 대한 퇴직금 7,991,370원을 지출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지출결의서 및 이 사건 지출결의서에 의거하여 C이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퇴직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취지의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그러므로 이 사건 지출결의서 및 공정증서를 통하여 원고와 C 사이에 위 액수의 퇴직금 지급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갑 제2, 3, 5, 2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지출결의서는 C이 소속 연구위원들에게 퇴직금을 지출할 것을 결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을 뿐이므로 퇴직금을 지출결의서에 기재된 액수로 정하기로 하는 합의가 존재하였음을 바로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

② 이 사건 지출결의서는 그 형식과 문구로 보아 이미 발생한 지급채무의 이행을 위해 금전을 지출한다는 것으로서 관련 법령 등에 의해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 작성된 문서로 보이므로 그 대상인 채권채무관계가 별도로 확정되어 있어야 할 것인데 이를 확인할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다.

③ 이 사건 공정증서는 그 문언에 비추어 이 사건 지출결의서와 별도로 퇴직금 지급에 관한 합의를 하거나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는 것으로는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C이 해산된 뒤인 2015. 1. 28. 작성된 것으로서 그 기재 내용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

④ 설령 원고의 주장을 '원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공정증서로써 2015. 1. 28. 퇴직금 지급에 관한 새로운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선행하더라도, 위 일시에는 이미 C이 해산되어 청산인으로 I이 취임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C을 대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G에게 그 권한이 있는지에 관한 의문이 있어 이를 무효로 볼 여지가 크고, 해산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를 두고 퇴직금 지급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이와 같이 판단하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퇴직금지급 합의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통정허위표시 등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취지의 피고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3) 법령에 따른 퇴직금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규정

●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1조(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 제4조 제1항 본문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나 제25조 제1항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조 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제도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한 퇴직금제도가 전혀 설정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는 적어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27730 판결 등 참조).

3)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참조). 한편 상여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참조).

(나) 퇴직금채권의 발생 및 산정기준

1) 위 법리에 따르면, C이 설정한 퇴직금제도의 구체적 내용에 관한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적어도 C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 제8조 제1항에 따라 퇴직한 근로자인 원고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원고가 2014. 12. 9. C으로부터 특별상여금 6,422,28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원고가 근로기간 동안 지급받은 특별상여금은 위 2014. 12. 9.자 1회가 전부이고, 달리 위 특별상여금이 원고에게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일률적·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특별상여금 6,422,280원은 평균임금의 산정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3. 11. 5.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는바, 계속근로기간은 그 다음 날인 2013. 11. 6.부터 산정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무효라고 주장하나, 원고 스스로 퇴직급여 17,937,869원에서 중간정산받은 퇴직금 9,946,500원을 공제한 7,991,369원을 청구금액으로 그 지급을 구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달리 중간정산이 무효라는 점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다시, 원고와 C 사이에 퇴직금의 중간정산에도 불구하고 계속근로기간을 최초 근로 시부터 기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원고가 산정한 퇴직금 내역(갑 제5호증)에 기재된 산정상여금 1,601,171원은 그 지급 근거를 찾을 수 없고, 특별상여금 6,422,280원의 1/4에 해당하는 1,605,570원과 금액이 유사한바, 단순히 특별상여금을 기간별로 나누어 놓은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 퇴직금 계산에 포함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 외 명절상여비는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지급된 것이 없어 산정기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 퇴직금의 계산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원고의 평균임금 및 법정 퇴직금을 산정하면 아래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기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2,171,31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평균임금 산정기간 : 2014. 9. 19.부터 2014. 12. 18.까지1) 91일

○ 평균임금 산정대상 급여 총액 : 5,871,840원 [= 2014. 9.분 788,000원(= 2014. 9.분 급여 1,970,000원 × 12일/30일) + 2014. 10.분 급여 1,970,000원 + 2014. 11.분 급여 1,970,000원 + 2014. 12.분 급여 1,143,840원, 인정근거 : 을 제21호증의 기재]

○ 1일 평균임금 : 64,525원(= 5,871,840원 ÷ 91일, 원 미만 버림)

○ 계속근로기간 : 2013. 11. 6.부터 2014. 12. 19.까지 1년 1개월 14일

○ 법정 퇴직금 계산 : (1년 + 1개월/12개월 + 14일/365일) × 1일 평균임금 64,525원 × 30일 = 2,171,310원(원 미만 버림)

나.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성립 여부

(1) 관련 법령

[정치자금법]

● 제28조(보조금의 용도제한 등) ① 보조금은 정당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인건비

▶ 제30조(보조금의 반환) ①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해산되거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 또는 정책연구소가 해산 또는 소멸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보조금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정당 보조금의 지출내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반환한다.
2. 정책연구소 보조금의 사용잔액을 소속 정당에 인계한다. 이 경우 정당은 새로이 설립하는 정책연구소에 그 잔액을 인계하여야 하며, 정당이 해산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1호에 준하여 이를 반환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이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징수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④ 보조금 잔액의 반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37조(회계장부의 비치 및 기재) ① 회계책임자는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금과 보조금 외의 정치자금, 선거비용과 선거비용 외의 정치자금은 각각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 제3조(국고귀속대상 당비의 처리)②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된 경우 외에 국고귀속대상 당비가 있음을 확인한 때에는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정당의 회계책임자에게 납부를 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정당의 회계책임자가 국고귀속대상 당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을 받은 정당의 회계책임자가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여야 한다.

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징수한 국고귀속대상 당비의 국가에의 납입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① 정치자금법 제30조(보조금의 반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지출내역의 보고는 별지 제26호 서식(이하 '별지 서식'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정치자금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잔액반환에 관하여는 제3조(국고귀속대상 당비의 처리)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 제2항의 보고 또는 반환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정당법]

● 제48조(해산된 경우 등의 잔여재산 처분) ① 정당이 제44조(등록의 취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되거나 제45조(자진해산)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해산한 때에는 그 잔여재산은 당헌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정당의 잔여재산 및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③ 제2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2) 구체적인 판단 가) 정당은 적어도 그 소유재산의 귀속관계에 있어서는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헌법재판소 1993. 7. 29. 92헌마262 결정 참조), 비법인사단의 경우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가운데서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추 적용되는 것이므로, 그 해산에 관한 민법 규정들도 유추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하는바, 민법상 '청산'이란 해산한 법인이 처리되지 않고 남아 있는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정리하며,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의 절차를 말한다. 우리 민법은 법인의 잔여재산이 국고에 귀속할 때에(민법 제80조 제3항 참조) 국가가 포괄승계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고는 법인의 잔여재산을 특정승계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 경우 잔여재산은 청산절차를 통해서 국고에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한편 정당법 제48조 제2항은, 등록취소되거나 자진해산한 정당의 '잔여재산' 중 처분되지 아니한 정당의 '잔여재산' 및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등록취소되거나 자진해산된 정당은 물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경우에도 여기에서의 '잔여재산'은 해산된 정당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정리하는 작업, 즉 청산사무가 완료된 이후 남은 확정된 재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정당사무관리규칙 제24조 제1항은, 정당법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켜야 하는 정당은 그 등록취소일 또는 해산일부터 2월 이내에 국고귀속대상 잔여재산에 관한 상세내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잔여재산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역시 해산한 정당 등이 청산 목적범위 내에서 존속하면서 그 청산사무를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고 해석된다.

다) 정치자금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정당 및 그 정당이 설치한 정책연구소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 함께 해산되는 경우 정당보조금은 그 지출내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한 뒤 잔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정치자금법 제37조 제1항에 의하면 보조금의 회계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정당보조금으로부터 지출된 돈에 의해 정책연구원이 자산을 취득한 경우 이를 '정당보조금에 관한 적극재산'으로, 정당보조금으로부터 반복적으로

지출되어 온 명목에 관하여 정책연구소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이를 '정당보조금에 관한 소극재산'으로 파악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정치자금법 제30조 제1항에서의 '잔액'은 해산된 정책연구소의 정당보조금에 관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정리하는 작업, 즉 청산사무가 완료된 이후 남은 확정된 정당보조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며, 피고 역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채권을 압류한 이후에도 C로 하여금 일반채무를 변제하도록 행정지도를 한 것으로 보여 이와 같은 해석을 뒷받침한다.

또한 정치자금법 제30조는 정당 재산 일반에 있어서의 잔여재산의 귀속에 관한 정당법 제48조와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바, 정치자금법 제30조의 규정이 잔여 보조금의 처리 문제 해결을 넘어서 보조금 환수에 있어 국가를 특별히 우월하게 취급하려는 의도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해석하기도 어렵다.

라)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먼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은 C이 지급받은 정당보조금에서 지출되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정당보조금에 관한 적극재산으로 볼 수 있다. 한편 C 소속 연구위원의 퇴직금을 비롯한 인건비는 정치자금법이 정한 정당보조금의 용도에 부합하고,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에 의하면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정책연구소의 해산 시 인건비 지출내역을 포함한 정당보조금의 지출내역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별지 서식 참조), C은 원고를 포함한 연구위원들의 임금, 명절상여금 등의 인건비를 정당보조금에서 지급하여 온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C에 대한 퇴직금채권은 정당보조금에 관한 소극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 B정당과 함께 해산된 C에 대한 피고의 정당보조금 반환채권은 정당보조금에 관한 잔여재산청구권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서, 피고는 애초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서 원고의 퇴직금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잔여 정당보조금으로서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잔액 전부를 국고에 귀속시켰고,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징수를 위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 그 재산의 가액이 징수할 국세액을 초과한다 하여 압류가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제3채무자인 D, E으로서의 채납처분압류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피고에게 지급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피고는 원고와의 관계에서 퇴직금 상당액에 관하여 법률상 원인없이 부당이득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소결론 가) 그렇다면 피고는 D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잔액을 지급받은 2015. 3. 17. 앞서 인정한 원고의 퇴직금 등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권리 주장을 두고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며, 이와 같이 판단하는 이상 원고의 퇴직금채권과 피고의 정당보조금 반환채권이 서로 경합하거나 충돌함을 전제로 하여 그 우열관계를 다투는 원고와 피고의 주장들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먼저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금액을 계산하면 2,193,320원 [= 퇴직금 상당액 2,171,310원 + 2015. 1. 3.2) 부터 피고의 부당이득 시점인 2015. 3. 17.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2,010원(= 2,171,310 x 0.05 x 74일/365일, 원 미만 버림)]이 된다.

다) 원고는 위 퇴직금 상당액에 대하여 2017. 11. 20.까지 지연손해금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잔액을 지급받음으로써 부당이득을 취한 일시는 2015. 3. 17.이므로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2015. 3. 17.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원고의 주장에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로서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전제에서 부당이득금 자체에 대한 법정이자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선해하여 보건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지급 상대방과 관련하여 법령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부당이득 당시부터 악의의 수익자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며, 다만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보게 되므로 결국 피고는 이 사건 소장부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위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비율에 따른 법정이자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한편 부당이득반환채무는 기한이 없는 채무로서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소장부분을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위 부당이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2,193,3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12. 2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1. 2.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제1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인용하는 금액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정민

판사김병룡

판사이순형

별지

1) 평균임금 산정 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 동안'의 기산에 있어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아야 하므로(대법원 1989. 4. 11. 선고 87다카2901 판결 등 참조), 원고의 퇴직일인 2014. 12. 19.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2) 원고는 2014. 12. 19.부터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퇴직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2015. 1. 3.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범위 내에서 인용하기로 한다.